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9] <개정 2025. 2. 7.>

출입공무원의 증표(제155조관련)

(앞 면)

제 호

검 사 공 무 원 증

직 명
성 명
생년월일

사 진

위의 사람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임을 증명함

유효기관 년 월 일부터
년 월 일까지

국토교통부장관
시 · 도지사 [인]

90㎜×60㎜
(청색켄트지 120g/㎡)

(뒷 면)

1. 이 증표를 소지한 공무원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·장비·자동차·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자동차·장부·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.
2. 검사 및 확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.
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